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4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3.)

상정 ·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3.1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1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김윤덕)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1. 법의 목적에 지역 간의 조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추가(이춘석·권성동의원안 제1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에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해결하고,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1997년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광역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으로 확대되었음.

개정안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인 지역격차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 도모를 이 법의 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대도시권(특·광역시)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에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는 입장인바,

개정안은 지역격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측면, 이 법의 당초 입법 취지인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효율적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대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도청소재도시 등 포함(김윤덕의원안 제2조제1호,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제2조제1호, 조배숙의원안 제12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김윤덕의원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1)]

---

1)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함)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춘석·권성동의원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특별자치도와 그 지역과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조배숙의원안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

< 조문대비표 >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 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조(정의) ----------.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그 도시 또는 지역과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	제2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 의원안	조배숙의원안
		---.	
<신 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신 설>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 의원안	조배숙의원안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신 설>			제12조의2(거점도시 등의 대도시권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인 도시(이하 이 조에서 "거점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제2조제1호에 따라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 의원안	조배숙의원안
			로 정하는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거점도시”로 보고, 같은 호 나목 및 제2조제3호 중 “시ㆍ도”는 “시ㆍ도 및 거점도시”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제1호[2]에 따라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3]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의 권역을 규정[4]하고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은 현행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3조[5] 및 제3조의2[6]), 광역교통 개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3. (생 략)

3)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 ③ (생 략)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선대책의 수립(제7조[7], 제7조의2[8]),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제10조[9]) 등이 적용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됨(법 제11조[10]).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③ ~ ⑤ (생 략)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⑥ (생 략)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 대도시권 포함 시 변경사항 >

구 분	현 재	포함 시
광역철도 역 인근 주차장	X	O
공영차고지	X	O
화물자동차 휴게소	X	O
BRT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시	O
환승센터	X	O
광역교통계획	X	O
광역교통개선대책	X	O
부담금납부	X	O

※ 국토교통부

그런데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정의에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별시와 광역시가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현재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도청 소재 도시 등은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없어, 광역생활권 구축이 어렵고 교통·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들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실제로 개정안들에 따를 경우 추가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김윤덕의원안에 따를 경우 현재 기준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시와 그 인근지역이 새로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이춘석·권성동의원안에 따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인근지역이 새로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조배숙의원안에 따를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춘천시와 그 인근지역이 포함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는 제주시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별 추가도시 비교표 >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 지역은 제외	특별자치도 및 그 도시 또는 지역과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1)] 전주시 춘천시

주 1) 제주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인바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됨

< 김윤덕의원안에 따른 대도시권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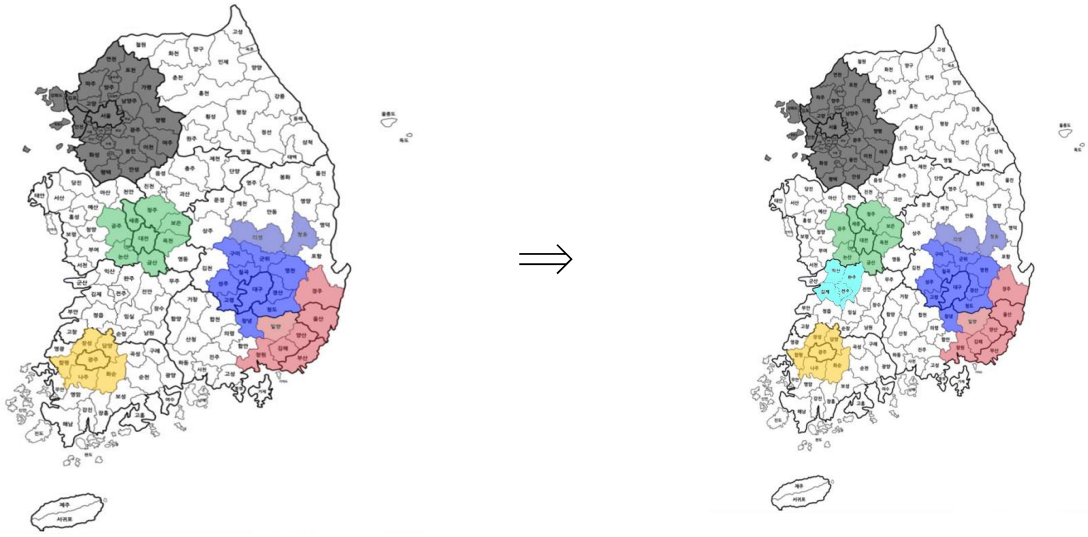

현행 기준 대도시권	개정안 기준 대도시권(전주권 추가)

※ 파란색 지역이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주 1. 음영부분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추가되는 대도시권 범위
자료 : 국토교통부

< 이춘석·권성동의원안에 따른 대도시권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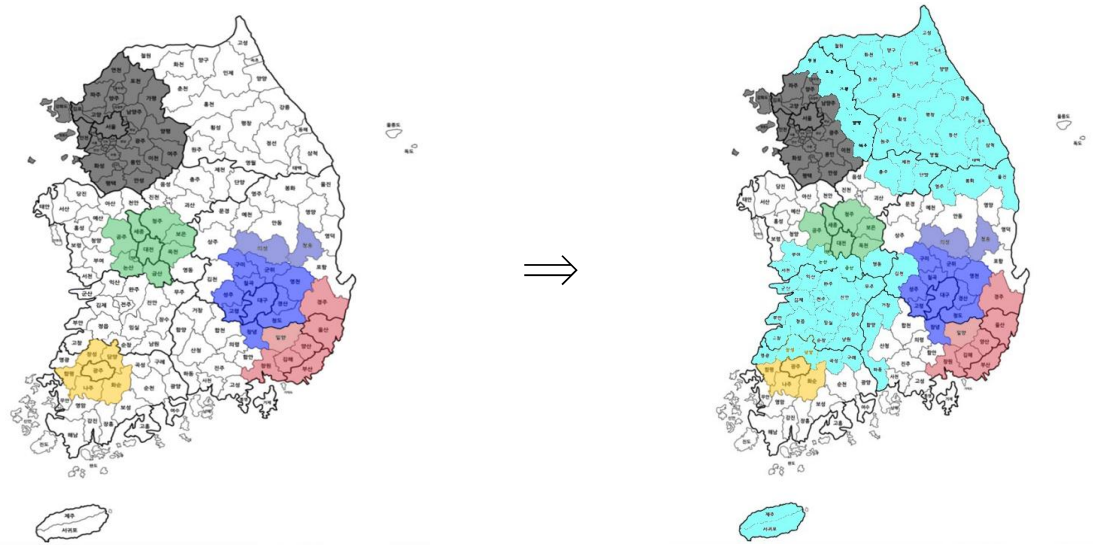

현행 기준 대도시권 ⟹ 개정안 기준 대도시권(특별자치도 추가)

※ 파란색 지역이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전북권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주 1. 음영부분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추가되는 대도시권 범위
주 2.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표에 미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 조배숙의원안에 따른 대도시권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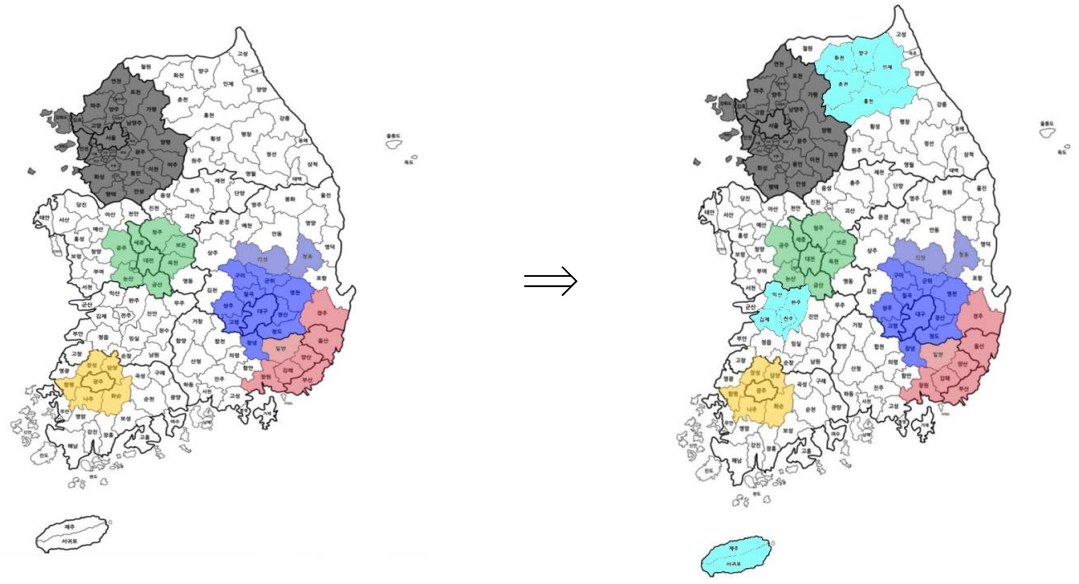

현행 기준 대도시권	개정안 기준 대도시권 (특별자치도 도청소재지 추가)

※ 파란색 지역이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춘천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주 1. 음영부분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추가되는 대도시권 범위
주 2.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표에 미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지정 현황 >

연번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구(명)	도청소재지	현행 대도시권
1	경기도	수원시	1,196,671	경기도청	ㅇ
2		고양시	1,071,802		ㅇ
3		용인시	1,083,456		ㅇ
4		성남시	916,615		ㅇ
5		화성시	956,503		ㅇ
6		부천시	773,689		ㅇ
7		남양주시	733,244		ㅇ
8		안산시	624,788		ㅇ
9		평택시	594,712		ㅇ
10		안양시	548,005		ㅇ
11		시흥시	518,371		ㅇ
12		김포시	486,128		ㅇ
13		파주시	507,470		ㅇ
14	충청북도	청주시	853,563	충북도청	ㅇ
15	충청남도	천안시	658,537		X
16	**전라북도**	**전주시**	638,964	전북도청	X
17	경상북도	포항시	492,435		X
18	경상남도	창원시	1,003,176	경남도청	ㅇ
19		김해시	531,891		ㅇ

* 인구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참고한 것이고, 2024년 7월말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2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공고, 2024. 1. 29.

< 도청소재지 현황>

도청소재지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여부	현행 대도시권 포함 여부	특별자치도 여부
수원시(경기도청)	○	○	×
춘천시(강원도청)	×	×	○
청주시(충북도청)	○	○	×
예산·홍성군(충남도청)	×	×	×
안동·예천군(경북도청)	×	×	×
창원시(경남도청)	○	○	×
전주시(전북도청)	○	×	○
무안군(전남도청)	×	×	×
제주시(제주도청)	×	×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들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 법은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한 대도시(특·광역시)가 인접한 시·군과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할 때 지자체간 갈등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이를 해결하고 제정된 특별법이라는 점,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에 지원 가능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시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통행량 등 교통수요에 대한 통계자료, 향후 국가 재정부담[11],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발주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방안 연구용역」('21. 5. ~ '22. 12.)에서는김윤덕의원안과 같이 도청소재지인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의 도시권을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안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측되고 장단점이 존재하여 향후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에 새롭게 편입되는 도시(2024년 8월 인구 기준) 및 인접도시의 광역교통시행계획, 동 계획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계획, 광역버스운송 계획 및 해당 계획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재정소요 추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도청소재지인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의 도시권을 대도시권 추가안 장단점>

구분	도청소재지인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의 도시권을 대도시권 추가안
장점	①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인구기준을 적용하므로 법적 근거가 있음 ② 지역의 사회·정치·경제 중심인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연계망 구축 확대 ③ 수도권(1개)과 비수도권(3개)을 모두 포함하므로 균형적 광역교통투자 가능 ④ 4개의 도시권에 한정하므로 전국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의 도시권(18개) 신설안에 비해 정부재정지원 부담 상대적 감소 ⑤ 대도시권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대도시권 지역의 무한정 확대와 전국화 축소
단점	① 광역교통수요가 높은 수도권 50만 명 이상 도시기준의 도시권(11개) 제외 ② 지방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 도시권 3개의 제외 ③ 대도시권내 중복 중심도시 지정으로 발전축의 분산 ④ 50만 명 미만 중소도시권에서도 중심도시와 위성도시간의 밀접한 교통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역교통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대도시권에 한정한 광역교통시설 재정지원체계로는 중소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의 해결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투자를 지원하지 못함

※ 한국교통연구원,「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2022.12.30. p.122.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도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시키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12] 발의됨.

< 제21대국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대도시권 포함 관련 개정안 비교 >

김윤덕의원안	송재호의원안	정운천의원안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 지역은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
총 18개 도시	총 18개 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전주시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제2102276호, 2020.7.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제2108644호, 2021.3.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제2118684호, 2022.12.5.)

그러나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사이의 광역교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천안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 중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춘석·권성동의원안 및 조배숙의원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2조[13]에 따라 도내 생활권에 대하여 도지사가 교통시설 등이 포함된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섬이라는 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륙의 시·도와의 연계를 위하여 연륙(連陸) 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률적 근거[14]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광역시설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이 절에서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있음.

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법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대도시권(특·광역시)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에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같은 도(道) 내 시·군 간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도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군 간 통행까지 광역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법 취지 불부합).

개정안들에 따르면, 유사한 규모의 도시권(대도시권에 기포함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50만 이상 도시, 일반 시도의 도청소재지 등)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우려되며, 대도시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음.

2) 기획재정부

대도시 광역교통 특별법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문제는 상급기관이 없으므로 국가가 불가피하게 개입·지원하는 취지이므로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취지와 무관하며, 같은 도(道) 내 시·군 간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도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광역교통시설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정의에 ‘특별자치도’ 및 ‘도청소재대도시’ 추가(김윤덕의원안 제2조제2호,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제2조제2호, 조배숙의원안 제12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김윤덕의원안은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도청소재대도시’ 역시 동 기준에 포함하려는 내용임.

이춘석·권성동의원안은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하는 내용임.

조배숙의원안은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도’의 범위에 도청소재 도시(거점도시)를 동 기준에 포함하려는 내용임.

< 조문대비표 >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	제2조(정의) ----------. 2. ----------.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도	제2조(정의) ----------. 2. ----------.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청소재대도시----------	(이하 “시ㆍ도”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	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	나. ~ 아. (현행과 같음)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3.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시·도 및 도청 소재대도시-------- ---------- ---------- ---------- ---------- ---------- ---------- ----------.		
<신 설>			제12조의2(거점도시 등의 대도시권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이 조에서 "거점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제2조제1호에

현 행	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조배숙의원안
			따라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거점도시”로 보고, 같은 호 나목 및 제2조제3호 중 “시ㆍ도”는 “시ㆍ도 및 거점도시”로 본다.

나. 검토의견

1) 개요

현행법 제2조제2호[15]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도로, 광역철도 등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조제3호[16]에서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17]에 따른 노선 여

---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생 략)
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간선급행버스체계'[18]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으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거나 걸쳐 운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2) 김윤덕의원안

김윤덕의원안은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에 특별자치도와 도청소재대도시를 포함함으로써 도청소재대도시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도 사이에 걸쳐 운행하는 도로・철도를 광역교통시설로 인정하고,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는 광역교통(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광역버스운송사업에 한함)에 대해 둘 이상의 특별시·광

---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 다. (생 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② ・ ③ (생 략)

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행만 인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개정안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에 '도청소재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전주시와 그 인근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더라도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를 경우 전주시와 그 주변 지역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시설과 운송사업은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청소재대도시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 사이에 걸쳐 운행하는 도로ㆍ철도를 광역교통시설로 인정하고,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전주시와 군산(새만금)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같이 전주권 특별자치도 내 통행도 광역교통과 광역버스운송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현행법 제10조[19]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동 개정내용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도청소재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려는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동 개정 여부와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3)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이춘석·권성동의원안은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함으로써 특별자치도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 사이에 걸쳐 운행하는 도로ㆍ철도를 광역교통시설로 인정하고,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그런데, “시ㆍ도”의 약칭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20]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21]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서도 특별자치도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 사이에 걸쳐 운행하는 도로는 광역도로로 인정받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특별자치도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 사이에 걸쳐 운행하는 도로·철도, 버스운송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20)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21)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4) 조배숙의원안

조배숙의원안은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기준에 특별자치도와 도청소재도시(거점도시)를 포함함으로써 도청소재도시(거점도시)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 사이에 걸쳐 운행하는 도로ㆍ철도를 광역교통시설로 인정하고,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전주시, 춘천시, 제주시와 해당 특별자치도 내 통행도 광역교통과 광역버스운송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김윤덕의원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동 개정내용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도청소재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려는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동 개정 여부와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법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대도시권(특·광역시)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에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같은 도(道) 내 시·군 간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도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군 간 통행까지 광역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법 취지 불부합).

개정안에 따라 대도시권 범위가 확장될 경우 유사한 규모의 도시권(대도시권에 기포함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5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등)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우려됨.

2) 기획재정부

대도시 광역교통 특별법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문제는 상급기관이 없으므로 국가가 불가피하게 개입·지원하는 취지이므로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취지와 무관하며, 같은 도(道) 내 시·군 간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도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지자체의 장에 특별자치도지사 추가(김윤덕의원안, 이춘석·권성동의원안 제3조 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을 들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임.

현 행	김윤덕의원안·이춘석·권성동의원안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조[2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그런데, "시·도지사"의 약칭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

---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23]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24]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서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규정이 없어 "시·도지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정안들에 따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동 개정내용은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대도시권의 범위에 도청소재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또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려는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동 개정 여부와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3)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② 생략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24)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② 생략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4. 대체토론 요지

(한준호 위원) 전주 등 전북권이 광역도시가 없다보니 물류, 교통 측면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법에 50만 이상 도시라든지 특별한 범위를 두어서 추가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 문진석)

권영진의원, 김윤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